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167
----------	------

제출일자 : 2022.

제출자 : 달성군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적용 대상 범위 규정(안 제3조)
- 나.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다. 실태조사 관련 사항 규정(안 제5조)
- 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관련 규정(안 제6조)
- 마. 소상공인 특례보증 · 이차보전 관련 규정(안 제7조~제10조)
- 바.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사무위탁 규정(안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타
 - (1) 입법예고(2022. 9. 8. ~ 9. 28.)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6)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각종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업장 주소가 군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은 경역혁신과 지역사회 공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⑤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특례보증대상) ①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마련하여 운용하는 지침 등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3.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제9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용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할 경우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용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원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5. 연체 등에 의하여 이차보전금이 증가한 경우

6.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군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 중 일부를 군 출자·출연기관이나 사업추진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정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 정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사업 추진 계획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재정적 요인이 발생할 것이나,
- 구체적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이나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 또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세부적인 사안이 확정되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의 특성상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비용추계를 진행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함.